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1)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 내지 제5조)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

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기본사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기본사회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기구 등(안 제8조 내지 제15조)

1)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2) 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본사회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7.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 등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  
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  
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2.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  
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  
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본사회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

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3.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내 기본사회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0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자문단·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652